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㈜한국씨티은행

2. 조치일 : 2020. 9. 15.

3. 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○ 개선사항 1건

※ 개선사항 및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1. 파생상품 거래 관련 내부통제제도 불합리

□ **한국씨티은행**(이하 "은행")은 파생상품 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

(1) 표준거래약정서 체결 절차 개선

□ 내규 「딜링룸운영세칙」에 따르면 ◎◎◎본부가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표준거래약정서*를 체결토록 하고 있으나 다국적기업 대상 거래, 계약기간 1년 미만의 통화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표준거래약정서를 체결하지 않고 있으므로

* ISDA, 외환거래약정서, 장외파생상품기본계약서 등

동 외환파생상품 거래시에도 표준거래약정서를 체결하도록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·운영하시기 바람

(2)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관련 점검·통제 절차 개선

□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당자가 기업의 연간 거래한도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*하므로

* (예) ① 기업이 제출한 위험회피목적 증빙과 상이한 금액을 연간 거래한도로 입력
② 연간 거래한도를 미등록하거나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거래 실행 등

앞으로는 ◎◎◎본부의 자체점검 및 ◎◎◎부의 제3자 검증을 강화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

(3) 외환파생상품 거래 자료에 대한 전산 등록·관리 철저

□ 거래 기업으로부터 징구받는 상품설명서, 일반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 부서인 ◎◎◎부가 자체 보관함에 따라 중요 서류의 미징구, 날짜 등 필수기재 항목 누락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

앞으로는 외환파생상품 거래 건별로 상품설명서, 일반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체계적으로 등록·관리하고 필요 서류가 전산시스템에 모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거래 실행이 가능토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·운영하시기 바람

(4)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위임 절차 등 개선

□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승인과 관련한 제3자 위임 기준 및 절차가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

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승인 행위를 위임받는 자,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가 필요한 파생상품의 종류, 보고 기준·절차 등을 내규에 반영하시기 바람

(5) 파생상품 가격적정성 검토 절차 개선

□ 은행은 계열회사 등과의 신용파생·상품파생 관련 백투백거래(back-to-back)의 경우 가격적정성 점검을 생략하고 있으며 외환계약을 조기에 인도하면서 동일거래 상대방과 동일자에 다시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손익이전계약(historical rate roll-over)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기 파생상품 거래가 시장가격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가격적정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

□ 은행은 가격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예외거래에 대해 2주 단위로 ◎◎◎부와 ◎◎◎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어 내부통제의 시의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예외 거래에 대한 보고주기를 단축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

□ 은행은 가격적정성 점검시 거래당일 손익(Day1 PL)의 허용한도를 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10만 달러로 운영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 상품의 특성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허용한도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

(6) 상품파생 중개 거래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개선

□ 은행은 상품파생 중개(2018.6.27. 금융위 인가) 관련 업무방법서 등 독립된 내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상품파생 중개 내역, 수수료 수입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도 구축·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

상품파생 중개 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·평가 및 통제하기 위한 내규·전산시스템 등 관련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를 개선·운영하시기 바람